

유니버설 디자인과 다목적화장실



글_박 윤 남 (편집부장)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모든 사람(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포함)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누구라도 자립해서 이동과 외출 등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지만 아직 일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용어 중에 하나로 들릴 것이다.

우리 협의회에서 ‘공중 화장실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배경에는 2000년도에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의 공중화장실 실태조사(10개 도시 × 100개=총1,000개소)가 큰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도 형식적인 설치에 불과하여 근본적으로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턱이나 계단이 있고 휠체어가 움직일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반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사용을 못하게 된 곳이 많았다.

특히 조사 대상도시가 비교적 복지시설이 잘된 월드컵 개최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공용을 포함하여도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화장실은 39%

에 불과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자 화장실」의 기본 원칙은 약칭 “장애인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신축 및 개·보수되고 있다.

장애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인데 너무 길어서 편의상 줄여서 『장애인 등에 관한 법률』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지 장애인만을 위한 법률은 아니다.

이 법률의 시행규칙 제2조 1항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대한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보면 출입구에 자동문 설치와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 설치만 보완된다면 법률 자체는 복지가 있는 화장실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출입구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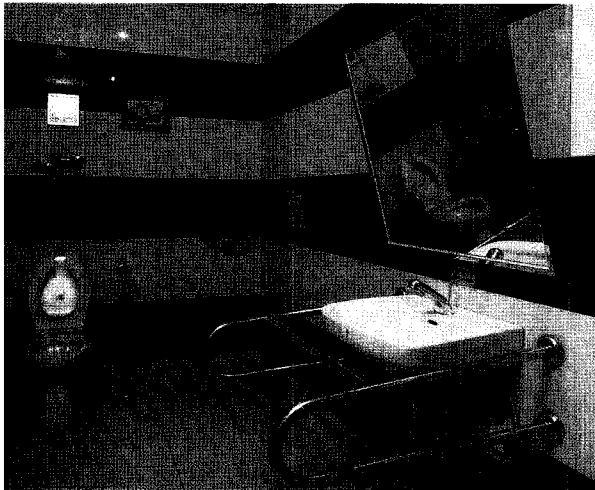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고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일정 규격과 함께 15도 경사거울 설치를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은 0.8m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 바닥면적이 폭 1.0m이상에 깊이 1.8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 전망좋은 화장실

우리 협회회의 공중 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가 비교적 복지시설이 잘된 곳으로 알려진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남녀공용을 포함하여도 다목적 화장실(구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39%에 불과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하철7호선 청담역의 다목적화장실

한다.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 0.75m이상의 공간 확보와 대변기 전면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공간확보를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화장실의 개념

우리 협회회는 그 동안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바뀌어야 될 공중화장실의 기본방향을 3가지로 설정하게 되었다.

「문화가 있는 화장실」은 과거에 단순히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장소를 이제는 화장(化粧)·독서·사색 등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며

생활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가 있는 화장실」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하거나 소외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어 누구라도 자립해서 이동과 외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화장실」은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는 외관과 색채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화장실 내에서 모든 처리가 완료되는 정화시스템을 갖추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적인 화장실로 바꾸자는 것이다.

장애인의 현황

최근 보건복지부는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수를 전 인구의 3.09%인 약14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하여 선진국인 미국(20.6%), 호주(18.0%), 독일(8.4%), 일본(4.8%)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장애인의 정의, 유형, 장애의 판정기준 등이 국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나 산업재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정부는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데이터 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하여 개발된 제품과 시설 소개 및 장벽 제거를 위한 자료 제공 정도로 이제 시작에 불과한 실정이다.

21세기에는 모든 사람(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환자 등을 포함)이 자립하여 이동 및 외출 등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극 도입 되길 기대한다.

다목적 화장실



수원시 다목적 화장실 표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고나 발병으로 인한 장애의 발생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불행하게도 장애인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바라보거나 심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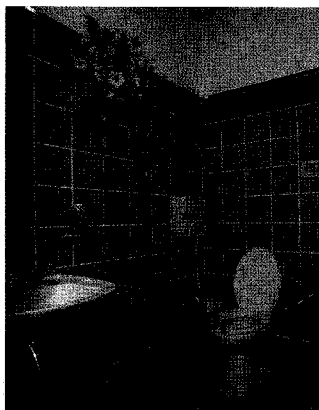
장애인 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화장실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의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 환자만 이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고 높은 설치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용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청소 도구함으로 바뀐 곳도 많이 있었다. 우리 협의회는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어감이 주는 거부감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용어와 표지판을 다목적 화장실로 바꾸어 현실적으로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기 불편한 노약자, 임산부, 환자 등 사회적 약자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화장실 시설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화장실협회 야마시타 토오루(山下 亨) 회원은 우리 협의회지 美小空(아름다운 작은공간) 2001년 5월호에 연재기획 일본의 화장실(3)에서 『오스토메이트 들에게도 쾌적한 화장실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오스토메이트(ostomate)는 인공 방광 및 항문을 장착한 환자 등과 같이 외형상으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장애자를 가리키며, 이 내용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배려시설은 너무 형식적인 것만 추구하는 느낌이 든다.

21세기에는 누구라도 자립해서 이동 및 외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이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 용산 가족공원에 위치한 자연빛 화장실



▲ 화장실문의 표지판을 심플화한 오스토메이트 표시(일본)

※오스토메이트란?

인공 방광 및 항문을 장착한 환자 등과 같이 외형상으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